

應急醫療에 관한 法律

{ 1994 · 1 · 7 }
法律第4730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危急狀態에 있는 患者에 대하여 適期에 적정수준의 應急醫療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應急患者의 生命과 건강을 보호하고 國民醫療의 적정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應急患者”라 함은 疾病 · 分娩 · 각종 事故 및 災害로 인한 負傷이나 기타 危急狀態에서 즉시 필요한 應急處置을 받지 아니하면 生命을 보존할 수 없거나 心身상의 重大한 危害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患者를 말한다.
2. “應急處置”라 함은 應急患者에게 행하여지는 氣道の 확보 · 心搏의 회복 기타 生命의 위험이나 症狀의 현저한 惡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處置를 말한다.
3. “應急醫療”라 함은 應急患者의 발생으로부터 生命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過程에서 應急患者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相談 · 救助 · 移送 및 診療등의 措置를 말한다.
4. “應急醫療從事者”라 함은 醫療機關 · 應急患者 情報센터 ·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에 소속되어 應急患者에 대한 應急醫療을 提供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醫療人 · 應急構造士를 말한다.
5. “救急車등”이라 함은 應急患者의 移送에 적합한 自動車 · 船舶 · 航空機등 應急患者專用 移送手段을 말한다.
6. “應急醫療通信網”이라 함은 應急醫療을 효율적으로 提供하기 위한 應急患者 申告電話 · 應急醫療電算網 기타 有 · 無線通信網을 말한다.
7. “應急患者移送業”이라 함은 救急車등을 이용하여 應急患者등을 移送하는 業을 말한다.

第3條(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業務)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應急醫療通信網의 設置 · 운영 및 救急車등의 확보등 應急醫療體系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第2章 應急醫療 및 應急患者診療施設등

第4條(應急醫療의 거부금지등) 應急醫療從事者는 業務중에 應急醫療을 요청받거나 應急患者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應急醫療(자신의 免許 또는 資格의 범위안에서 행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행하여야 하며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第5條(應急醫療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應急醫療從事者의 應急患者에 대한 救助 · 應急處置 또는 診療를 방해하거나 醫療機關등의 應急醫療을 위한 醫療用 施設 · 機材 · 藥品 기타의 器物을 破壞 · 損傷하거나 占據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應急患者에 대한 優先診療등) ① 應急患者에 대하여 醫療人은 다른 患者에 우선하여 診療하여야 하고 또한 診療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應急患者가 2人이상일 경우에는 醫學的 판단에 기초한 危急의 정도에 따라 診療하여야 한다.

③ 醫療人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患者에 대하여 당해 醫療機關의 능력으로는 그 患者에 대한 충분한 治療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患者를 충분히 治療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醫療機關으로 移送하여야 한다.

第7條(綜合病院의 應急醫療施設등) 綜合病院(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病院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應急患者에 대하여 적정한 診療를 할 수 있도록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人力 · 施設 및 裝備(이하 “應急醫療施設등”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第8條(非常診療體系) ① 綜合病院과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應急醫療機關으로 지정된 醫療機關은 公休日과 夜間에 當直應急醫療從事者를 두고 應急患者에 대하여 상시 診療할 準備(이하 “非常診療體系”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綜合病院의 長으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

常診療體系 유지를 위한 勤務命을 받은 應急醫療 從事者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常診療體系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豫備病床의 확보) ① 綜合病院은 應急患者를 위한 豫備病床을 확보하여야 하며 豫備病床을 應急 患者가 아닌 者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豫備病床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0條(應急室의 표시등) ① 綜合病院은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應急室”등 應急患者診療와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綜合病院의 醫療機關은 應急室 또는 應急患者 診療와 관련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13條의 規定에 의 하여 應急醫療機關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 및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應急室등의 표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應急患者가 아닌 者에 대한 措置) ① 綜合病院의 應急室에서 應急醫療에 종사하는 醫療人은 應急患者가 아닌 者가 應急室을 통하여 診療를 요청 하였을 경우에는 綜合病院의 應急室이 아닌 醫療施設에 診療를 의뢰하거나 다른 醫療機關에 移送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依頼·移送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2條(當直醫療機關의 지정) 保健社會部長官,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公休日과 夜間診療를 위하여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醫療機關의 種別·診療科目別·診療期間別로 當直醫療機關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應急醫療機關의 지정)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綜合病院이 아닌 醫療機關으로서 應急患者를 診療하기 위한 醫療機關(이하 “應急醫療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應急醫療機關의 지정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4條(지정의 取消등)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第13

條 第1項의 應急醫療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1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 때
2. 이 법과 또는 이 법에 의한 命命이나 처분 또는 이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3. 지정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應急患者의 診療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節次 기타 필 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한다.

第3章 應急救助士

第15條(應急救助士의 資格認定등) ① 應急救助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社會部長官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1. 應急救助學을 專攻하여 大學 또는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2. 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應急救助士 資格認定을 받은 者
3. 醫療法에 의한 醫療人
4. 保健社會部長官이 지정하는 應急救助士 養成機關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程을 履修한 者
5. 기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應急救助士 應試資格이 있는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救助士의 試驗, 資格認定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應急救助士가 될 수 없다.

1. 精神疾患者, 精神遲滯人
2. 麻藥, 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中毒者
3.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破產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第17條(不正行爲에 대한 制裁) ① 부정한 방법으로 應急救助士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應急救助士試驗에서 부정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受驗을 정지시키거나 合格을 無效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驗이 정지되거나 合格

이 無效로 된 者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年間 應急救助士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第18條(應急救助士의 業務) 應急救助士는 應急患者에 대하여 應急患者가 발생한 現場에서 救助業務를 행하며, 醫療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現場 또는 移送중에 應急處置를 할 수 있고 醫療機關內에서 診療의 보조로서 應急醫療機關業務에 종사할 수 있다.

第19條(應急救助士의 業務制限) ① 應急救助士는 醫療機關,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患者情報센터,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 또는 保健社會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機關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에 종사할 수 없다.

② 應急救助士는 醫師로부터 직접 또는 應急醫療通信網에 의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處置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應急處置를 행하는 경우와 급박한 狀況하에서 通信의 不能등으로 醫師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出動 및 保存期間) ① 應急救助士가 出動하여 應急處置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出動事項과 處置內容을 記錄하고 이를 당해 應急患者의 診療醫師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出動事項 및 應急處置의 記錄內容 및 방법에 관하여는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1條(記錄의 保存期間) 出動한 應急救助士가 속한 機關과 應急患者를 診療한 醫療機關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記錄을 5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第22條(應急救助士의 준수사항) ① 應急救助士는 應急患者의 安全을 위하여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 應急處置에 필요한 醫療裝備 및 救急醫藥品의 관리 등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應急救助士가 出動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應急救助士의 服裝을 着用하여야 한다.

第23條(應急救助士의 補修教育)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應急救助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補修教育을 명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補修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秘密漏泄의 금지) 應急救助士는 應急患者에

대한 救助 및 應急處置過程에서 職務상 알게 된 患者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章 應急患者情報센터

第25條(應急患者情報센터의 設置·운영)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應急醫療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應急醫療資源의 分布와 住民의 生活圈을 감안하여 地域別로 應急患者情報센터(이하 “情報센터”라 한다)를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② 情報센터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應急患者의 申告接受·案内·相談 및 처리
2. 應急醫療에 대한 각종 情報의 관리
3. 應急醫療通信網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業務
4. 기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 情報센터의 設置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6條(情報센터에 대한 協調) ① 情報센터의 長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醫療機關 및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에게 應急醫療에 대한 각종 情報의 제공, 救急車의 出動등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는 者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情報센터의 長은 地方自治團體·警察官署·消防官署 및 軍部隊의 長에게 救急車등의 出動등 應急醫療을 위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第27條(보고) 情報센터의 長은 情報센터의 運營實績을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社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5章 應急醫療基金

第28條(應急醫療基金의 設置 및 관리·運用) ① 應急醫療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應急醫療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保健社會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關聯機關 또는 醫療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保健社會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수를 할 수 있다.

③ 基金의 設置 및 관리·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基金의 造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醫療保險法과 公務員 및 私立學校教職員醫療保險法에 의한 療養取扱機關指定取消에 같음하여 保險者 또는 保險者團體가 醫療機關으로부터 徵收하는 금액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2. 應急醫療과 관련되는 機關 및 團體의 出損金 및 寄附金
3. 기타 基金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

第30條(基金의 使用)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1. 應急患者의 診療費중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未收金에 대한 代拂
2. 應急醫療機關의 육성·발전 및 醫療機關의 應急患者 診療를 위한 施設등의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또는 지원
3. 應急醫療體系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補助事業과 應急醫療를 위한 調查研究事業 및 弘報事業

第31條(未收金の 代拂) ① 醫療機關등이 應急患者에게 應急醫療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費用을 支拂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중 應急患者 本人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未收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管理機關의 長에게 代拂을 請求할 수 있다.

- ② 基金管理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등이 未收金에 대한 代拂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代拂할 수 있다.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代拂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基金管理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收金を 代拂한 경우에는 應急患者 本人, 扶養義務者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한 診療費負擔 義務者에게 그 代拂金を 求償할 수 있다.
- ⑤ 未收金代拂의 대상·범위·節次 및 방법과 求償의 節次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救急車등의 運用

第32條(救急車등의 運用制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醫療機關,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救急車등을 둘 수 있는 者, 應急患者移送를 目的事業으로 保健社會部長官의 設立許可를 받은 非營利法人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應急患者移送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아니면 救急車등을 運用할 수 없다.

第33條(다른 目的의 사용금지) ① 救急車등은 患者移送 및 患者診療를 위한 혈액·가검물등의 運搬 기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사항외의 다른 目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保健社會部長官·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救急車등에 대하여 그 運用의 정지를 명하거나 救急車등의 登錄機關의 長에게 당해 救急車등의 抹消登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抹消登錄을 요청받은 登錄機關의 長은 당해 救急車등에 대한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第34條(救急車등의 運用申告등) ①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救急車등을 運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救急車등을 登錄하기 전에 그 地域을 관할하는 保健所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醫療機關,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救急車등을 둘 수 있는 者, 應急患者移送를 目的事業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非營利法人 및 이 法에 의하여 應急患者移送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救急車등을 運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救急車등을 등록하기 전에 그 地域을 관할하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 및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35條(救急車등의 기준) ① 救急車등은 患者를 移送하고 應急處置하기에 적합하도록 設計·製作되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急自動車(이하 “救急車”라 한다)의 形態·표시 및 內部裝置등에 관한 기준은 保健社會部長官과 交通部長官의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③ 救急車を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自動車管理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部長官의 型式承認을 받기 전에 保健社會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第36條(救急車등의 裝備) ① 救急車등에는 應急患者에 대하여 應急處置를 할 수 있도록 醫療裝備 및 救急醫藥品등을 갖추어야 하며, 救急車등이 속한 機關·醫療機關 및 情報센터와 通貨할 수 있는 通信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裝備·救急醫藥品·通信裝備등과 救急車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37條(應急救助士의 配置) 救急車등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應急救助士를 두어야 한다.

第38條(移送處置料)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가 救急車등을 이용하여 患者를 移送한 경우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移送處置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39條(指導·監督) 市·道知事は 管轄地域안에서 運用하는 救急車등에 대하여 年 1회이상 救急車등의 運用狀況과 實態를 點檢할 수 있고, 點檢結果에 따라 是正指示·停止命令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7章 應急患者移送業

第40條(移送業의 許可등) ① 應急患者移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長官과 交通部長官의 共同部令으로 정하는 施設등을 갖추어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應急患者移送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應急患者移送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때에 必要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41條(條件附 許可) ① 保健社會附長官은 應急患者移送業을 許可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등을 갖추어 條件으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 保健社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正當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施設등을 갖추지 아니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第42條(許可의 제한) 保健社會部長官은 應急患者移送業을 許可함에 있어 一定地域内에서 應急患者移送의 需給狀況을 판단하여 需給상 심한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應急患者移送業을 許可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3條(營業의 承繼) ① 應急患者移送業者가 그 營

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民事訴訟法에 의한 強制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중전 의 營業者에 대한 營業許可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60日이내에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4條(休業등의 申告) 應急患者移送業者는 應急患者移送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業하거나 廢業 또는 再開發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5條(地圖醫師) ① 應急患者移送業者는 應急處置등을 指導받기 위하여 應急患者移送業의 事業場別로 醫師를 두거나 保健社會部長官이 지정하는 醫療機關의 醫師를 指導醫師로 選任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醫師의 業務 및 選任등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46條(應急患者移送業者의 준수사항) 應急患者移送業者는 應急患者의 安全을 위하여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第8章 許可取消등

第47條(應急醫療從事者의 免許·資格停止등)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應急醫療從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免許 또는 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免許 또는 資格을 정지할 수 있다.

1. 第4條, 第6條, 第9條 第1項, 第20條 第1項, 第22條, 第24條 또는 第52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8조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患者에게 重大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3. 第16條의 規定에 해당한 때
4. 應急救助士가 第19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處置를 한 때
5. 第23條 第1項의 命令에 위반하여 補修教育을 받

지 아니한 때

6.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移送處置料를 過多하게 徵收한 때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醫療機關 또는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開設 또는 營業許可의 取消 또는 閉銷를 명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를 停止할 수 있다. 이 경우 閉銷命令은 申告의 경우에 한한다.

1. 第7條, 第8條 第1項, 第9條 第1項, 第10條 第1項·第2項, 第21條, 第26條 第1項, 第33條 第1項, 第34條 第2項, 第36條 第1項, 第37條, 第40條 第2項·第3項, 第43條 第3項, 第44條, 第45條 第1項, 第46條 또는 第52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當直醫療機關으로 지정받고 診療를 하지 아니한 때

3.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未收金의 代拂을 부정하게 請求한 때

4.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移送處置料를 過多하게 徵收한 때

5.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指示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6. 第40條의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여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48條(聽聞)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相對方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9條(課徵金處分)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醫療機關 또는 救急車 등을 運用하는 者가 第47條 第2項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

의 課徵金을 賦果할 수 있다. 이 경우 課徵金의 賦果는 業務停止處分을 하는 것이 國民保健醫療에 커다란 危害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果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第9章 補 則

第50條(關係機關의 協助)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應急醫療施策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1條(救助 및 應急處置에 대한 教育)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醫療人 또는 應急救助士가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 하여금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教育을 받게 할 수 있다.

第52條(大量患者發生에 따른 措置) 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災害등으로 인하여 많은 患者가 발생하였을 경우 應急醫療從事者에게 應急處置등의 業務에 종사할 것을 命令하거나, 醫療機關의 長 또는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에게 醫療施設의 제공, 應急患者 移送등의 業務에 종사할 것을 命令할 수 있으며, 中央行政機關과 關係機關의 長에게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 應急醫療從事者, 醫療機關의 長 및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는 正當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거부할 수 없다.

③ 大量患者 발생에 따른 人名救助와 應急處置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3條(유사명칭사용금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救助士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센터가 아닌 者는 각각 應急救助士와 情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4條(應急醫療酬價基準) 應急患者診療에 대한 應

急醫療酬價의 기준은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할 수 있다.

第55條(權限등의 위임·委託등) ① 이 법에 의한 保健社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國立保健院長에게, 市·道知事の 權限은 그 일부를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限한다) 또는 保健所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關聯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56條(費用補助) 第5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聯機關 또는 團體에 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 있다.

第10章 罰 則

第57條(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救助士의 資格이 없는 者가 應急救助士를 詐稱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救助士의 業務를 행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 또는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9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師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應急處置를 행한 應急救助士
3.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다만, 이에 대하여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32條, 第52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8條(應急醫療行爲에 대한 刑의 減免) 應急醫療從事者가 應急患者에게 발생된 生命의 危險, 心身상의 重大한 危害 또는 病狀의 현저한 惡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應急醫療로 인하여 應急患者가 死傷에 이른 경우 그 應急醫療行爲가 불가피하고 應急醫療行爲者에게 重大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그 情狀을 참작하여 刑法 第268條의 刑을 減輕하거나 免除할 수 있다.

第5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第5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0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9條, 第10條, 第20條 第1項, 第2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4條 第20項, 第40條 第3項, 第43條 第3項 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4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
4. 第5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이 條에서 "賦果權者"라 한다)가 賦果·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果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果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1年の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② (應急醫療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에 應急醫療센터 또는 應急醫療指定病院으로 지정된 醫療機關중 綜合病院을 제외한 醫療機關은 이 법에 의한 應急醫療機關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救急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에 關한 保健所長에게 申告한 救急車는 이 법에 의한 救急차로 본다.

④ (應急救助士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에 市·道知事에게 應急救助士의 申告를 한 者는 이 법에 의한 應急救助士로 본다.